

#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

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』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.

## 1. 교섭요구 노동조합

- ◎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(대표 : 위원장 - 김성환)
- ◎ 교섭요구일자 : 2019년 03월 05일
- ◎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: 2019년 03월 05일 ~ 03월 12일

## 2. 교섭참여

- ◎ 참여방법 : 교섭요구 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
- ◎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  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
  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2019년 03월 05일

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센터장 김 라 경 (직인)

